2023. 7. 17.(월) 석간용
이 보도자료는 2023년 7월 17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보도자료

담당부서: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

사진없음 ☑ 사진있음 ☐ 매수: 10매

법무담당관	정 선 미	02-2133-6680
법제심사팀장	송 학 용	02-2133-6690
담 당 자	신 희 연	02-2133-6693
법무행정 서비스	http://legal.seoul.go.kr	

서울특별시 조례 제·개정 공포

서울특별시는 2023년 7월 11일 제10회 조례·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조례공포안 및 규칙안을 심의·의결하고,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(공포할 예정입니다).

《 자치법규 공포 일정 》

❑ 2023. 7. 17.(월)

○ 조례 : 2건(개정2건)

○ 규칙 : 2건(개정2건)

❑ 2023. 7. 18.(화)

○ 조례 : 58건(제정 7건, 개정51건)

❑ 공포방법: 시보 게재

☐ 조례 공포안 목록(2023. 7. 17. 공포)

연번	조 례 명	입법구분	소관부서
1	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	개정	조 직 담 당 관 (2133-6729)
– ‘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’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한시기구를 신설(한강사업추진단)하고 기존 한시기구(주택공급기획관·균형발전기획관·자원회수시설추진단)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.			
2	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	개정	조 직 담 당 관 (2133-6729)
– 한강사업추진단의 신설로 ‘한강사업추진단장’(3급) 및 그 산하에 ‘한강사업총괄부장’(4급)과 ‘한강전략사업부장’ 2명의 정원을 신설함. – 행정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행정수요 대응 등을 위해 총정원의 변동 없이 연구직(10명) 및 지도직(1명)의 정원을 조정함.			

☐ 규칙 공포안 목록(2023. 7. 17. 공포)

연번	조 례 명	입법구분	소관부서
1	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	개정	조 직 담 당 관 (2133-6729)
– 조례 개정에 따라 새로운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한시기구 신설 사항을 반영하고 조직의 소관 사무를 조정함. ▸ 한강사업추진단과 그 산하에 한강사업총괄부·한강사업전략부 신설 등			
2	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	개정	조 직 담 당 관 (2133-6729)
– 조례의 개정에 따라 새로운 행정수요 반영 등을 위해 총정원의 변동 없이 직렬·직급 간 정원을 조정함.			

☐ 조례 공포안 목록(2023. 7. 18. 공포)

연번	조 례 명	입법구분	소관부서
1	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	개정	아이돌봄담당관 (2133-4804)
- 서울시가 설치·운영하는 실내 어린이놀이시설과 서울 소재 민간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등과의 상생을 위해 민간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등에 대해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지원사업을 위해 자치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.			
2	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	개정	안심돌봄복지과 (2133-7380)
- 조례의 제명을 「서울특별시 동행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하고 유사 타 조례를 폐지함. - 취약계층의 보호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실현하고자 기존 동주민센터의 복합 기능을 복지·건강 분야 중심으로 재편함.			
3	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	개정	공공의료추진단 (2133-9242)
- '24.8. "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"의 신규 개원 예정에 따라 조례에 해당 병원을 추가함.			
4	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	개정	공공의료추진단 (2133-9235)
- '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'과 '서울의료원'의 통합에 따라 서울의료원에서 시장이 위탁하는 보건 의료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, 「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는 폐지하고 직원에 대한 조치 규정을 둠.			
5	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	개정	주차계획과 (2133-2353)
-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하여 이용 대상을 확대함. - 시간주차 수요가 저조하고 월정기권 수요가 높은 일부 서울시 공영 노상주차장에 대해 주차장별 실태 및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월정기권을 운영하고자 함.			
6	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	개정	자원순환과 (2133-3696)
- 민간에서 다회용품 사용 장려 사업을 하는 경우 시장이 행정적,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.			
7	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	개정	조경과 (2133-2126)
- 가로수 수종 선정시 환경오염 저감, 기후 조절 기능과 함께 탄소 흡수량이 많은 수종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, 녹지 확충을 위해 도로의 교통섬에 그늘목 식재, 화단 조성 등 다양한 가로녹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.			

연번	조 례 명	입법구분	소관부서
8	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	개정	복지정책과 (2133-7347)
-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에 '주거와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'과 '교육 지원사업'을 추가함.			
9	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	개정	어르신복지과 (2133-7417)
- 2020년 전국 기준 혼자 사는 노인가구가 전체 노인가구의 35.1%를 차지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홀로 사는 노인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구체화하여 홀로 사는 노인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.			
10	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	개정	디자인정책담당관 (2133- 2192)
-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시 미리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시민의 문화향유권 증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체계적 계획 수립을 도모하고자 함.			
11	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	개정	관광정책과 (2133-2804)
- 관광산업 발전과 관광 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, 자치구 등과 협력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추가함.			
12	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	개정	교통정책과 (2133-2229)
- 재난 발생 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비율을 현행 30% 범위에서 50% 범위로 상향 조정하여 호텔 등 숙박업의 교통유발부담금 부담을 경감함.			
13	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	개정	기후환경정책과 (2133-3513)
- 기후위기 대응 일환으로 저탄소 보고문화 정책의 정착을 위해 서울시 및 산하기관에서 인쇄 관련 물품 구입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 의무를 규정함.			
14	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	개정	공원여가정책과 (2133-2017)
- 다자녀 가족의 도시공원 입장료를 면제함.			
15	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	개정	자연생태과 (2133-2161)
- 도시숲 등의 친환경 방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도모하고자 함.			

연번	조 례 명	입법구분	소관부서
16	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	개정	의 료 자 원 과 (2133-7533)
- 마약류 및 유해 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한 사업의 범위에 '마약류 취급 감시 등 안전관리'를 추가하여 마약류 등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시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.			
17	서울특별시 마이스(MICE)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	개정	관 광 정 책 과 (2133-2824)
- 급속하게 성장하는 마이스산업의 환경변화를 행정에 반영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고, 서울마이스산업육성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.			
18	서울특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	제정	공원여가정책과 (2133-2033)
-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,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,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등 맨발 걷기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.			
19	서울특별시 문학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	개정	문 화 예 술 과 (2133-2562)
- 비영리법인, 문학단체 지원사업의 대상을 구체화하는 한편, 「문학진흥법」에 따라 문학진흥 및 국민의 문학 향유를 위하여 문학 관련 교육이나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문학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함.			
20	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	개정	물 재 생 시 설 과 (2133-3835)
- 「하수도법」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물재생시설 관리대행업체 선정 시 민간위탁 선정 절차가 아닌 「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」(환경부지침)을 적용하고, 대행비용 원가 산출 근거를 마련함.			
21	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	개정	물 재 생 시 설 과 (2133-3836)
- 물재생시설 내 체육시설 이용료 50% 감면 대상과 주차시설 이용료 50% 감면 대상을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 확대함.			
22	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	개정	도 로 관 리 과 (2133-8164)
- 공사 등 주변 환경의 변화로 안전 또는 원활한 통행을 저해하는 보도상영업시설물의 경우 서울시가 위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(저해 요인이 해소된 경우 원위치 가능) 원활한 통행 및 건물주와 시설물 운영자 간 분쟁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.			

연번	조 례 명	입법구분	소관부서
23	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	개정	안 전 지 원 과 (2133-1651)
-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및 자살 예방 등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안전을 위한 사업, 복지지원 사업,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분리하여 규정하고,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“보건안전 및 후생복지심의위원회”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함.			
24	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	개정	급 수 설 비 과 (3146-1471)
- 원인자의 신청으로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을 최대 2년 이내 4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.			
25	서울특별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	개정	친 환 경 차 량 과 (2133-4413)
- 수소산업육성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, 당연직 위원의 직급을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			
26	서울특별시 순직·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	제정	안 전 지 원 과 (2133-1651)
- 각종 소방활동과 재난 현장에서 순직 또는 부상을 당한 서울시 소속 소방공무원과 그 유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해 시장의 책무, 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, 취업과 창업 지원, 순직소방공무원의 추모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			
27	서울특별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	제정	체 육 진 흥 과 (2133-2733)
-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의 진흥과 서울특별시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.			
28	서울특별시 시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	개정	홍 보 담 당 관 (2133-6424)
- 경품의 종류, 제공 방법 및 금액 등 경품 제공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시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자의적인 경품 제공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.			
29	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	개정	시 민 감 사 옴부즈만위원회 (2133-3129)
- “현장민원”에 대한 정의 규정과 현장민원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. 또한, 현장민원 확인·점검에 따른 평가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, 시민참여옴부즈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.			

연번	조 례 명	입법구분	소관부서
30	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	개정	아동담당관 (2133-5164)
- 최근 공공기관 및 시설 내 아이들의 안전한 체험과 성장을 위한 공공키즈카페 등 아동이용공간이 확대 설치되고 있는바, 조례에 명확히 명시하여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를 원활히 하고자 함.			
31	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	제정	안전지원과 (2133-8535)
-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및 기반 조성을 위해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,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한 안전용품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.			
32	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	개정	보행자전거과 (2133-2427)
- 학교용지 일부를 활용하여 어린이 통학로를 설치 및 관리하는 것을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. - '서울특별시경찰청장'의 용어를 통일하고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를 의무화함. 한쪽 방향 도로만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 필요시 반대편 도로까지 보호구역 지정 및 무인 교통 단속용 장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.			
33	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	개정	양성평등담당관 (2133-5019)
- 다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게 여성발전센터의 직업교육 및 보육실, 생활문화교육의 이용료 면제 근거를 규정함.			
34	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	개정	교육지원정책과 (2133-9278)
- 다자녀가족의 자녀에 대한 양육 교육 지원을 확대하여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함. - 아동·청소년인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수가 매우 적음에 따라 교육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교육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.			
35	서울특별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	제정	교통운영과 (2133-2470)
-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예방 및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 적정성, 사고 통계조사, 급발진 안전체험센터 운영 등 시민안전 보호와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피해 구제제도 및 체계를 마련함.			
36	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	개정	대기정책과 (2133-3668)
-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에 탄소와 오염물질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륜자동차를 공회전 제한 대상에 포함하고자 함.			

연번	조 례 명	입법구분	소관부서
37	서울특별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	개정	아동담당관 (2133-5175)
- 자립준비청년시설의 정의를 규정하고, 자립준비청년 등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의 근거를 정비하는 한편, 퇴소청소년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 신설을 통해 자립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함.			
38	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	개정	장애인자립지원과 (2133-7479)
- “장애인 가족 지원사업” 내용을 추가하고,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자치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			
39	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	개정	장애인복지정책과 (2133-7363)
-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에 한국수어, 점자 및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장애인의 선택에 따른 의사소통 수단 제공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증진하고 사회참여를 도모하고자 함.			
40	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	개정	장애인복지정책과 (2133-7468)
- 서울시 장애인에게 버스 이용요금을 지원하여 장애인 당사자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장애인 이동권을 확대하고자 함.			
41	서울특별시 재난 예보·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	개정	재난상황관리과 (2133-0048)
- 재난 예보·경보 전파 시 발령 사유, 재난 발생 위치 및 시간, 대피가 필요한 경우 대피 방법 및 대피소 위치,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전파내용에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함.			
42	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	개정	문화정책과 (2133-2519)
- 현재 세종문화회관은 대관 규정과 공연장 대관 내규를 마련하여 공정한 대관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바, 세종문화회관 대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서울시 규칙이 아닌 세종문화회관 규정 및 내규로 정하도록 개정함.			
43	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	개정	조경과 (2133-2112)
- 정원도시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, 정원진흥실시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, 지방정원 및 국가정원 운영·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.			

연번	조 례 명	입법구분	소관부서
44	서울특별시 조례 “건설기술자”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	개정	건 설 혁 신 과 (2133-8106)
- 「건설산업기본법」 등 개정으로 “건설기술자”는 “건설기술인”으로, “건설업자”는 “건설사업자” 등으로 변경되어 해당 용어를 조례에 반영함.			
45	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	개정	재난안전정책과 (2133-8031)
- 기반시설관리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효율적·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함.			
46	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	개정	청 년 정 책 반 (2133-4322)
- 「청년기본법」 개정('23.3.21.) 사항을 반영하여 청년친화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, 서울시 청년지원기관의 유형 및 기능, 체제 개편과 그에 따른 명칭 변경, 경비지원 확대 근거를 마련함.			
47	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	제정	청 년 정 책 반 (2133-6581)
-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, 청년친화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하여 청년친화적인 사회적 환경 조성 및 청년의 성장과 권익 증진을 도모함.			
48	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	개정	가족다문화담당관 (2133-8682)
- 임신·출산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하여 난자동결 시술 비용 및 정·난관 복원시술비를 지원하고,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			
49	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	개정	치 수 안 전 과 (2133-3871)
- 침수 방지를 위한 시장과 시민의 의무를 규정하고,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건축물에 우선적으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			
50	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	개정	체 육 정 책 과 (2133-2678)
- 태권도 진흥사업 중 하나로 노후화된 태권도시설 개·보수 비용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태권도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.			
51	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	개정	물 재 생 시 설 과 (2133-3769)
- 「물환경보전법」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질하수도사용료 징수 근거 조항을 수정함.			
52	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	개정	물 재 생 계 획 과 (2133-3819)
- 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 수입금을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악취저감시설 설치에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함.			

연번	조 례 명	입법구분	소관부서
53	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	개정	물재생계획과 (2133-3788)
- 개발행위로 인해 공공하수도 공사가 필요한 경우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는데,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방법(현금, 신용카드·직불카드) 및 분할 납부 근거 규정을 마련함.			
54	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	개정	보건의료정책과 (2133-7671)
-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서울시 공무원, 지방공사 및 공단 근로자가 헌혈하는 경우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.			
55	서울특별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	제정	예방과 (2133-1511)
-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위임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하여 소방설비 등 설치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을 규정함.			
56	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	개정	기후환경정책과 (2133-3613)
- 조례명을 상위법령에 맞춰「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로 개정하고,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, 학교 등에서 환경교육 지원, 사업자 및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,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.			
57	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	개정	체육정책과 (2133-2678)
-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저해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시립체육시설 사용허가 제한조건을 신설하고,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입장료 면제 및 사용료 감면 확대, 체육시설로 인한 소음·교통체증 발생지역의 주민에게 프로그램수강료 등 감면, 지역·직능단체 등 주민화합과 발전을 위한 공공의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의 경우 전용 사용료 감액 등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낮춰 체육시설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.			
58	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	개정	기획담당관 (2133-6633)
- 시장 및 교육감이 국가기관에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된 법령의 제·개정을 건의하는 경우 의견을 제출한 후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, 의견 제출 전 시민의 의견을 수렴·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개정함.			